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 : 황보승희 · 김상훈 · 박수영

정진석 • 유경준 • 백종헌

전봉민 · 조수진 · 정동만

서정숙・김 웅・이주환

김기현 · 김승수 · 서병수

강민국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노면전차를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재생사업에 노면전차의 건설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14) 신설).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를 15)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시철도법」제18조의2에 따른 노면전차의 건설·설치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7
목의 사업을 말한다.	<u>.</u>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	
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	
나의 사업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도시철도법」제18조</u>
	의2에 따른 노면전차의 건
	<u>설·설치사업</u>
<u>14)</u> (생 략)	<u>15)</u> (현행 14)와 같음)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